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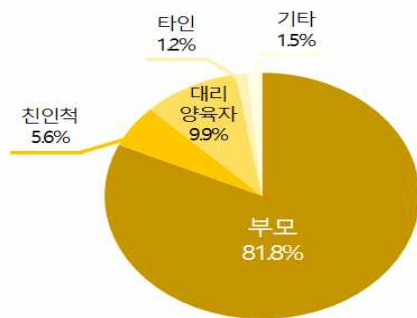
[초등학교용] 아동학대, 제대로 알고 대처합시다!

1 ■ 아동학대예방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선언문 中-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 중 하나는 자녀를 낳아 그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동안 그들의 성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환경은 그가 태어나 보호를 받고 양육되어지는 가정이며, 부모의 성격과 태도는 자녀의 본이 되며 자녀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바탕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자본을 중심으로 거대도시화, 정보화, 산업화 된 현대사회는 가정과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에 많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특히 아동학대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같은 심리정서적인 문제,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부부관계 등 많은 문제들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자녀의 잘못을 훈육하는 방법으로 체벌을 인정하고 체벌이나 꾸중이 아동학대의 한 행위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회적 관행이 있다.



<학대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2014)에 따르면 매년 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이며 학대행위자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33.1%)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동안 정부와 민관의 단합된 노력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서 학교에서 교사의 체벌이 사라져가고, 아동의 인권과 보호에

열심히 노력함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아동학대 문제들은 가정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부모들의 자녀학대 태도까지 변화시키기는 데에 힘이 미치지 못함을 말해준다. 특히 부모에게는 자신들과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모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학대유형 사례를 제시하여 학대가 아동의 성장에 끼치는 악영향을 설명함으로써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를 개선하고 이웃의 자녀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 아동학대의 정의와 원인

가 아동학대의 정의

1)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여기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고용주)를 의미한다.

2) 아동학대 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하며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제물손괴 등)와 복지법상 범죄(신체, 정서, 성, 방인),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를 의미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항).

나 아동학대의 원인

1) 심리역동이론에 의한 원인

심리역동이론은 부모의 어린 시절 학대경험이나 부적절한 임신과 출산환경으로 인한 심리문제가 자녀에게 학대를 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자녀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모는 아동에게 자신의 상처를 표출하여 욕구불만과 좌절을 해소하려고 하고, 부부간의 다툼이 있을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분노를 관심과 돌봄을 원하는 아동에게 학대로 화풀이 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부모라고 해서 다 자녀를 학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2) 학습이론에 의한 원인

학습이론은 가해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기술이 결여된 부모, 아동의 발달단계를 무시하고 어린 자녀에게 성숙함을 요구하는 부모, 어린 시절 체벌을 포함한 학대 경험이 있어 자녀에게 되물림하려는 고집을 가진 부모가 아동학대를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부모에게 적절한 아동양육법을 학습할 기회를 줌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3) 환경이론에 의한 원인

환경적인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증가되면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빈곤문제, 무학, 직업적 스트레스 등이 학대를 유발한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빈곤해도 학대하지 않는 가정이 많으며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에서도 많은 아동들이 학대를 받고 있으므로 이론적 근거가 빈약하다.

3 ■ 아동학대 사례

사례1 11살 학대 소녀 탈출 사건 (보도일: 2015년 12월 21일)

아빠와 동거녀가 11살 초등학생 딸을 2년 동안 자택에 감금하고 폭행하며 굶김. 아이는 11살 나이에도 불구하고 키는 7살, 몸무게는 4살 평균정도 밖에 되지 않았음. 딸이 자택을 탈출해 빵을 훔치다 붙잡힘. 아이의 상태를 의심한 상인이 경찰에 신고함. 아버지는 게임중독에 무직, 동거녀 직업 정확히 파악되지 않음. 아동범죄 처벌 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교육적방임으로 기소됨. 이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아동 대상 전수조사가 실시됨

사례2 부천 초등생 토막시신 사건 (보도일: 2016년 1월 16일)

8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토막 내어 시신을 3년 동안 냉동실에 보관함. 시신을 토막 내기 직접 치킨을 시켜 먹고, 시신 냄새를 숨기기 위해 청국장을 끓여 먹음.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에 들어간 경찰이 해당 아동의 실종·학대 정황 포착아버지는 직업이 없고, 게임중독 의혹이 있음. 어머니는 콜센터에 근무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어 검찰에 넘겨짐. 교육기관, 주민 센터의 미흡한 대처에 문제의식이 제기됨

사례3 친부모의 10세 여아 학대 사건 (보도일: 2016년 3월 11일)

어머니가 친딸(10세)이 시부모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끌고 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11월 추운 날씨에 맨발로 아파트 복도에 내보내는 등 학대를 함. 수시로 친딸의 얼굴을 손과 자 등으로 때리고 흥기로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함. 친딸에 대한 자신의 학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스스로 기관에 신고한 뒤 상담 과정에서 '딸의 행동이 느려 공부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주 때렸다'고 털어놓음

사례4 손녀 초등학교 안 보내 교육적 방임 (보도일: 2016년 3월 11일)

초등학생인 12세(5학년), 8세(2학년) 자매는 1년이 넘도록 등교하지 않고 생활하다가 발견됨. 무직 상태인 아버지를 대신해 100만원 남짓 월급으로 집안 살림을 맡아온 할아버지가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 학교에 못 보냈다고 털어놓음. 기관 조사에서 친할아버지의 '교육적 방임' 피해 사례로 판정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교육을 제대로 받게 하지 않아 손녀에게 교육적 방임을 한 것 외에 다른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음. 피해 아동들은 밤에 온라인 게임을 하고 낮에는 잠만 자는 아버지를 따라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음

사례5 평택 실종아동 원영이 사건 (보도일: 2016년 3월 12일)

4개월간 아들을 화장실에 감금해 온몸에 락스를 붓는 등 학대 후 야산에 암매장함. 학교가 아동의 결석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함. 계모는 노래방 도우미에 게임중독자이고 친부는 급여 500만원의 향만회사 직원임. 아들이 거리에서 실종됐다고 발뺌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함. 유치원 졸업과 초등학교 입학 사이의 아동관리 공백기에 대해 문제의식이 야기됨

4 ■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가 신체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처벌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법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등으로 처리 가능함 특히 아동학대치사 시, 무기징역 및 5년 이상 징역에 처함

나 정서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혹적인 행위
- 언어적 폭력행위, 정서적 위협,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등

처벌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법상	체포/감금(미수), 중체포/감금(미수), 특수체포/감금(미수), 체포감금치상, 협박(미수), 특수협박(미수) 등으로 처리 가능함

다 성학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처벌	아동복지법상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법상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주해(미수), 준강간, 미성년자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으로 처리 가능함

라 방임·유기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처벌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법상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학사, 유기 치상 등으로 처리 가능함

5 ■ 아동학대의 후유증 및 위험성

신체학대

- 정서적 문제, 행동상의 문제, 학습문제 등을 야기함
-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려질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긴장이나 공격성을 보임
- 성인기 자아 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음
- 성인기의 분노와 공격성, 수면 장애, 약물중독,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침

정서학대

- 유아기의 정서학대는 치명적인 후유증을 겪게 함
- 낮은 자아 존중감, 의존성, 우울증, 도벽, 거짓말, 낮은 학업 성취, 타인에 대한 공격성 등과 같은 문제 행동과의 관계가 입증되고 있음
- 가정폭력, 성인기 정신건강 문제, 약물중독이 가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남



- 수동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된 보이는 경향이 있음
- 방임이 지속되면 사회적 기능, 대인관계, 학업성취 등에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함
- 영유아기 주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후 발달상의 문제를 초래함
- 저학년기 학습준비도가 떨어짐
- 고학년기 심각한 학습장애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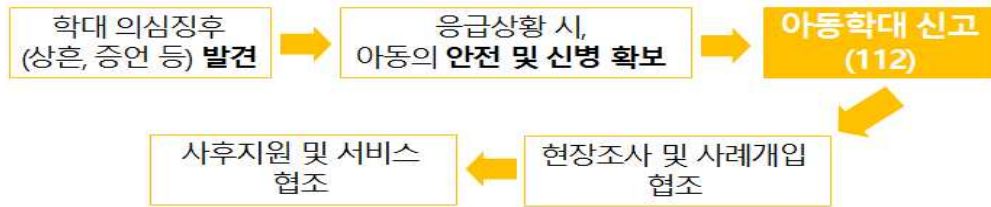
- 신체적 상해 이외의 자해, 우울증, 자아 존중감 상실, 성충동 조절의 문제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음
- 아동의 나이, 지속기간, 학대수준, 고의성, 위협이나 강압의 정도 등에 따라 성학대 후유증의 심각성이 좌우됨

방임·유기

성학대

6 ■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방법

가 아동학대 신고 절차



- 신고 현장에서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 보호시설 등으로 연계되고, 그렇지 않다면 귀가 조치 후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물적 증거와 목격자의 진술, 학대 행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아동학대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한다.
-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 후 학대로 판단되면 수사 의뢰하거나, 아동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다.

나 아동학대 신고 방법

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 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주변이나 이웃의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무엇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p>※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p>
어떻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국번 없이 112 ▪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스마트폰 :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내의 아동학대 신고 코너 <p>※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된다.</p>

아동학대는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수사를 담당한다. 다만, 아동학대 치사, 성적(性的) 학대 사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사건은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서 직접 수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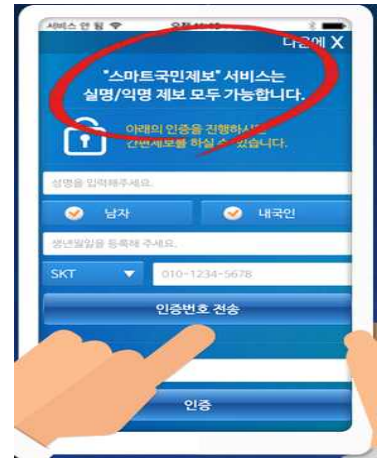
다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신고 방법



① 홈페이지(<http://netachpolice.go.kr>)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실명이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경찰청)’ 앱을 설치한다.



③ 실명인증을 해주세요. 익명 제보를 원한다면 상단의 ‘다음에 X’를 클릭한다.



④ 제보하기 메뉴에서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를 입력하고 제보 내용을 등록한다.



⑤ 112 전화신고 화면으로 연결되는 ‘긴급통화’ 메뉴와 ‘문자신고’ 메뉴도 활용할 수 있다.



⑥ 실종아동, 공개수배범 확인 및 제보, 교통위반 신고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TIP

☉ 해바라기 센터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및 가정 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전국 중소 도시 이상의 지역 거점 병원에 보통 병설 되어 있다. 보통 상담과 함께 법적, 행정적 및 의료적 지원을 한다. 사회복지사, 경찰, 행정 직원이 함께 근무하며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홈페이지(<http://www.womannchild.or.kr/>)

-지역별 해바라기 센터 주소 및 연락처 안내, 홈페이지(바로가기) 이용 가능

라 아동학대 신고 시 유의사항

-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한다.
-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한다.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는다.
- 진술의 오염이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 현장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 시,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래 24개 직군에 속하는 자
-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의료기사
3.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15.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17.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7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가 체벌은 바람직한 훈육방법일까?

1) 훈육과 체벌

훈육	· 의지나 감정을 함양하여 바람직한 인격형성의 주목적을 달성하는 교육
체벌	· 일정한 교육적 목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행위 ⇒ 고통을 줌으로써 아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

2) 아동의 입장에서 본 체벌의 의미

- 아동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선택이 그 행위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결과가 된다.
- 체벌은 아동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를 유발하지 않으며, 아동이 자각하지 않는 한 **교육적 효과는 없다.**

3) 체벌의 부작용

- 체벌을 가한 사람과의 사이에 **중지 않은 인간관계**를 만들 우려가 있다.
- 체벌을 하는 성인의 감정이 격해져 아동의 뺨을 손이나 슬리퍼로 여러 차례 때리거나 혹은 대걸레 자루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체벌을 가하는 등 ‘사랑의 매’로는 보기 어려운 아동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아동학대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아동들은 부모나 교사의 체벌을 통해 폭력성을 학습하여 **학교폭력, 가정폭력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체벌을 사용하기 보다는 **대안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올바른 양육방법

1) 아동 중심의 양육 태도 갖기

- 차별 없이 자녀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한다.
- 자녀에게 애정과 격려를 통해 긍정적 발달을 도와준다.
-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한다.
- 자녀의 성장과 안녕을 위해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가진다.
-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는 동시에 자녀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귀 기울여 준다.

-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해나갈 수 있도록 적절히 도와준다.
-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을 가족 전체 속에서 보려고 노력한다.
- 자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녀를 중심으로, 자녀와 함께 의사를 결정한다.
- 자녀를 존중하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되도록 한다.
- 자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질서나 규칙을 함께 선정하고, 합의하여 지켜 나가도록 도와준다.
- 부모 자신의 긍정적·낙천적·진취적인 삶의 가치들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훌륭한 모델이 되어준다.

2) 자율적이고 일관된 부모의 태도 갖기

<p>나의 양육 효능감 살펴 보기 (○, 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 나는 아이들을 돌보는데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 나는 아이를 잘 도우려고 해도 아이가 내 뜻을 따라주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 ▪ 나는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다. ▪ 나는 일관성 있게 아이를 훈육할 수 있다. ▪ 나는 아이가 나를 좋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 ▪ 나는 다른 부모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 나는 어머니로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 나는 좋은 어머니가 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	---



TIP 양육효능감이란?

부모가 자녀 양육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모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는 부모가 온전히 가정에 남아 자녀를 양육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며 완벽한 모성, 이상적인 어머니상은 현실적으로 어머니들에게 상대적인 나쁜 엄마라는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어머니나 부모가 자녀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죄책감을 가지면 자녀에게 나쁜 엄마노릇을 하게 되고 자신감이 줄어들어 자녀를 방임하거나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 어머니의 불행에 대한 보상심리로 자녀에게 과잉애착을 하여 아이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훼손하는 뱀파이어 모성이 되어서도 안 된다. 부모가 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그래 그랬구나!” 하고 수용한 뒤에 자녀를 향해 손을 내밀고 함께 노력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다.

“당신만이 아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한결같이 감싸주는 게 아이에게 좋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아요.”

-바바라 알몬드(2016. 4. 2. 한국일보)

3) 자녀에게 훈육하는 대화법

■ **행동의 규제가 필요할 때, 직접적인 대화법을 한다. (O, X)**

- 엄마는 네가 지하철에서 조용히 하면 좋겠어. ()
- 식당에서 떠들지 말라고 했어 안했어? ()
-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하는 거야! ()

■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O, X)**

- 겨우 이거밖에 안 되나? ()
- 똑바로 해라! ()
- 공부하려거든 네 방으로 가거라. 여기는 복잡하구나. ()
- 셋 셀 때까지 안 오면 밥 안 준다. ()

■ **애걸하거나 계속 말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버릇을 나쁘게 한다.**

■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 숙제 다 하지 않으면 오늘은 밖에 나가지 못한다. (실제로 통제해야 함)

4) 어긋난 행동 바로잡기

■ **자녀의 어긋난 행동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O, X)**

-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더니 감기 걸려서 엄마를 애먹이려고 걱정했네. ()

■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 뒤에 숨겨진 욕구와 필요를 공감해 준다. (O, X)**

- 엄마 몰래 화장을 하다니 너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나보구나. ()
- 엄마 몰래 화장을 하다니 화장 빨리해서 좋을 게 없어! ()

■ **자녀를 존중하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를 경험케 하거나 벌칙을 정해서 바로잡는다.**

■ **벌칙은 자녀가 정하도록 하고 잘못된 행동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 **체벌이 지나치면 자녀는 복수심이나 적개심을 일으킨다. 일시적인 효과뿐이며 잘못된 대가를 치렀으므로 자신은 용서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반복한다.**

아이를 칭찬하거나 사랑을 표현할 때 좋은 말이 있다.

"네가 내 아이라서 고마워.", "네가 능장을 부려도 네가 내 아이라서 고마워.", "네가 엄마 애간장을 녹여도 네가 내 아이라서 고마워.", "응가도 힘들게 누고, 어른 딸똥만 한 똥을 뉘서 비닐장갑 끼고 똥을 으깨야 하지만 네가 내 아이라서 고마워." 그래야 아이가 크다.

- 임영주의 「엄마라서 행복해, 내 아이라서 고마워」 중에서 -

8 ■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더 생각해보기

가 아동학대에 대하여 버려야 할 편견

- 1)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려고?' 라는 생각
 - 매년 아동학대행위자의 83%이상이 부모이며, 특히 방임은 90%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모라는 이유로 누구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아동을 양육할 것이라는 편견은 주의해야한다.
- 2)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
 - 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 행위자가 계부모 혹은 양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통계에 따르면 친부모가 아동학대한 경우가 79.7%이다.
- 3) '사랑의 매'가 존재한다는 생각
 - 부모 중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 속에 신체폭력을 자행하기도 한다. 아동의 잘못된 행동이 매 맞음으로 고쳐지지도 않으며, 어떤 이유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다.
- 4) '한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라는 생각
 - 아동학대의 85%이상이 '가정 내 발생'하였으며, 피해아동의 70%이상이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혹은 그보다 자주 학대받았다'고 보고한다. 아동학대는 지속적이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5) '아이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
 - 학대피해아동의 87.4%가 장애, 정서·정신건강, 적응·행동, 발달 등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이는 학대의 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는 한편, 학대후유증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 6)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
 - 아동학대는 고질적으로 반복·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히 대응되지 않으면 만성화될 우려가 있으며, '아동사망'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동학대 문제는 가정사라는 관점 대신에 인권중심의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 사회범죄 예방을 다지는 첫걸음이라는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 7) '이 정도가 아동학대?' 라는 생각
 - 연쇄살인범 유영철, 김길태 등 강력범죄자들의 어린 시절을 조사한 결과 66.7%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불화 등 부모문제로 고통 받았다.' 고 보고하였다.
 - 성장과정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아동학대 피해 경험은 성장과정에 아동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 사회전반에 부정적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나 아동학대 피해 관련 Q&A

- 아동이 학대로 인한 충격으로 심적으로 불안해 할 때, 조사를 받으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나요?

피해 아동을 조사할 때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이 조사관에게 신청하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아동이 동석을 원치 않거나 신뢰 관계인의 동석이 피해아동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아동이 나이가 어려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학대 피해 아동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보호·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는 아동·장애인 등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법을 익힌 전문 수사 경찰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진술 조력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금 성인이지만, 미성년자일 때 당한 아동학대 피해를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성년이 되어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 더 큰 피해를 막으려고 신고하긴 했지만 가해자가 처벌까지는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동학대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가정보호의 필요성, 피해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행위자는 판사의 결정에 의해 접근 제한, 친권 제한, 사회봉사·수감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치료위탁·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 학대 피해 아동을 경찰에서는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나요?

경찰관은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서 아동학대 행위 제지, 가해자 격리,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병원 등으로 인계하는 응급조치 실시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학대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고 긴급할 경우 ‘긴급임시조치’ 결정으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이후 임시조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가해자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가해자를 격리하기를 원하지만 신고가 꺼려질 경우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역시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 아동 학대 사건을 진행하면서 변호사가 필요할 때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학대 피해아동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요청하시면 검찰을 통해 국선변호인이 지정됩니다.